

2009년 물관리기본법 추진동향

이 성 희

(sain@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수자원기획팀 계장

■ 추진 배경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가뭄(2001년, 2009년) 및 홍수(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경제발달에 따른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90년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질문제에 대한 법정부적 대책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등 가뭄, 홍수, 수질오염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관리는 자연환경적(기상학적, 지형학적)인 요인과 아울러 물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994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수질관리는 환경부,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로 나뉘었고, 상하수도

업무는 환경부, 방재업무는 행안부, 수력발전(한강 수계 발전용 댐)은 지경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지방하천 및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등 물관리 공급 주체별, 수요주체별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다.

매번 가뭄, 홍수가 발생되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의 수법(Water Acts)과 같은 물관리의 모범이 되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물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원칙을 정립하고, 행정조직체계상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체계에 대한 일원화(물관리업무 통합) 또는 협의·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물관리기본법이 물관리 주체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물관리 기본원칙, 이념을 정립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행정부처(국토부, 환경부) 통합등에 초점이 맞춰져 물관리기본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물관리기관간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 추진 동향

가. 1차 1997년(15대 국회)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7년 6월 5일 제15대 국회에서 한화갑, 방용석 의원외 26명이 의원입법발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물관리기본법안 내용은 물관리 기본원칙(유역 관리, 균등배분, 비용부담 등), 국무총리소속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한국물관리연구원 설치를 골자로 하고 물관리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였다. 기본법에 대한 소관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되어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에서 1997년 6~7월에 논의만 되다가 2000년 5월 29일에 15대 국회 회의만료로 폐기가 되고 말았다.

비록 법안 제정이 불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법안 제정이 시도되었고, 관련 이해주체들간에 물관리기본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나. 2차 2006년(17대 국회)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1997년 법안과 비교하여 기본원칙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물관리 조직에 있어 국무총리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물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 연구원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2006년 10월 27일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정부입법발의를 하였으나, 소관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3차례 상정(2007년 2~6월)

되었으나 의결이 되지 못하고 결국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1997년과 동일하게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 회의만료로 폐기되었다.

다. 3차 2009년(18대 국회)

정부는 우리나라 수질·수량, 가뭄·홍수 등 근본적인 물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느때 보다 우리나라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학계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여론이 형성되었다.

학계에서는 물분쟁 사례 및 물관리기본법 심포지엄(2009.3.6) - 이승호 교수, 기후변화대응 물관리 기술(2009.4.22) - 박성제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2009.5.22) - 이승호 교수 등 다양한 수자원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물관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2009년 3월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에서 정부조직변경사항만을 반영한 물관리기본법을 10명의 의원들과 공동 의원입법발의를 하였고, 2009년 6월 9일 이운성 국회 부의장 주관으로 “통합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토론회”가 개최되어 물관리기본법 제안발표와 환경단체, 각 중앙부처를 대표한 토론이 있었고, 2009년 7월 이운성 의원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의를 거쳐 2009년 8월 31일 이운성 의원등 26명의 공동 의원입법발의를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28일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관으로 “우리나라 물관리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관리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을 2009년 10월 30일 이병석 의원 등 16명의 공동 의원입법발의를 하였다.

■ 주요 내용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의 물관리 기본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의안원문 발췌)

가. 제안취지

1990년대 들어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흉수·가뭄 관리, 깨끗한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갈등 해소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원인은 흉수·가뭄, 수량·수질, 생활 용수·농업용수 등의 문제가 하천환경, 상·하류, 중앙·지방 정부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기존의 법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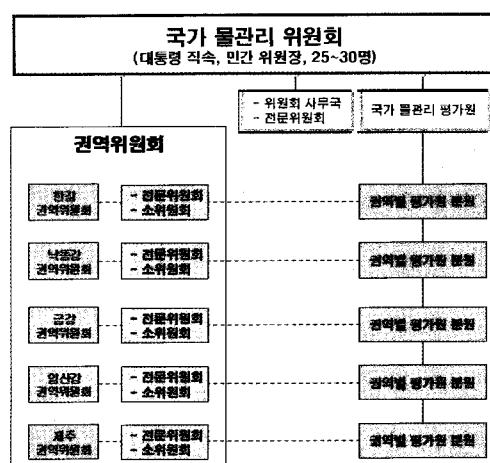
이러한 물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과 2006년에 물관리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었고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법안으로 잘못 인식되어 물관리 중앙부처 간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물관리기본원칙, 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제도적 틀을 담았고,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수립한 국가물관리전략에 따라 권역별 물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됨으로써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관리로써 지역 간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

나. 주요내용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유역별 관리의 원칙, 통합관리의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 물수요 관리 우선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등 기본원칙을 명시
- 물관리 국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관리기관은 이를 적용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둠
- 국가물관리전략에 따라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권역별 위원회를 둠
- 국가물관리전략과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국가물관리평가원을 설립함



■ 마무리

1990년대부터 줄기차게 요구되어온 물관리기본법안이 1997년과 2006년 2차례의 폐기를 경험하고, 2009년 김소남 의원(3월)과 이윤성 의원(8월), 이병석 의원(10월) 대표로 물관리기본법이 의원입법발의가 되었다.

그러나 가뭄, 수해, 수질문제 등 우리나라 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련 조직, 법령체계를 아우르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원칙에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농업용수분야에서도 기득수리권 보장, 농업인의 농업용수

관리 비용부담 예외인정, 농업용수전문가 참여보장을 요구하였고 이윤성 의원법안에 농업용수분야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 아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물관리 기본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으나, 지난 2차례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물관리기본법과 관련된 중앙정부, 시민환경단체, 학계, 기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법이 통과가 될 때까지 많은 혼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가습을 축하합니다

■ 신규 단체회원사

- (주)서화건설 - 대표이사: 곽선기
- (주)다산컨설팅 - 대표이사: 이해경
- (주)삼안 - 대표이사: 정영욱

■ 신규 개인회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시설안전처: 하위구, 이주형, 최광섭, 강병문, 흥경필, 노경륜

충남지역본부 사업관리팀: 김병찬, 박민국

충남지역본부 천안지사: 김현중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 김영호, 안순식, 임부선, 이위재